

Ⅲ. 학교 자치 규정



군서미래국제학교 학생자치회 규정(20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군서미래국제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는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 학생회 회원은 군서미래국제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학생회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본회의 회원은 교칙의 범위 안에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규정과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의 의무를 갖는다.

제4조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학생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로 지정한다.
- ②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최소 3인으로 구성한다.
- ③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4. 리더십 캠프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전교 학생회

제5조 【임원】 학생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 ① 전교 학생회장 1인, 고등 부회장 1인, 중등 부회장 1인, 초등 부회장 2인
- ② 각 부서의 부장 1인

제6조 【부서】

- ① 학생회는 학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당해 년도 회장단이 학생회의 운영 목적에 맞추어 임의로 부서를 개설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임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전출, 졸업 등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장 선출을 다시 하지 않고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서는 상급 급별(고등,중등,초등(학년,생년월일)) 부회장 순으로 한다.
- ③ 부장은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부장의 임시 부재 또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서 내의 협의로 부원 중 한 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원 선출 및 자격】

- ① 회장, 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출하고 학생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학교장에게 명단을 제출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시는 임시 대의원 회의에서 회장, 부회장을 추천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된 학생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학교장에게 명단을 제출한다.
- ② 각부의 부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거나 공모하여 선발하고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 ③ 학생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교사의 추천을 받고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

제9조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당해 선출된 당선자 공고에 명시된 날부터 다음 년도의 당선자 임기 시작 직전까지이며, 다음 년도 지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학년초 임원 구성을 적극 추진할 의무가 있다.
- ② 임원이 임기 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제10조 【대의원회 구성】 대의원회의 의원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학생회 각 부서 부장, 학급회장, 학급부회장으로 하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초등과정 학급회장은 별도의 초등 교육과정 계획 내 하우스 운영 계획에 의거 각 하우스 대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②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③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제12조 【대의원회 회의】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대의원 재적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또는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 2일 전에 회의 안건을 학생들에게 공고해야 하고, 대의원은 학급회의를 통해 안건에 관한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급자치회에서 학급회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의원회 의결】 대의원회 회의 시 의결은 다음과 같다.

- ①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된 사항은 학생자치회에서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협의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의원은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으로 하고,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한다.

- ① 학생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③ 대의원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④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또는 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의결】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선관위 의원은 학생회 운영위원 중 최소 4인 이상의 희망자로 구성하여 선거 공고일 3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학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지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거나 공모하여 선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 ③ 선관위 위원이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한 경우 위원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선관

위 필요 유무에 따라 재학생 중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 【선관위의 기능】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 ① 정·부회장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② 선거활동에 관한 사항
- ③ 선거 선전물, 정견 발표에 관한 사항
- ④ 투표용지 제작,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투·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
- ⑥ 당선자 확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제21조 【선거일공고】 선거일은 지도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선거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선거권】 회장 후보에 대한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에게 있다. 다만, 부회장의 경우 투표자의 초·중·고등 급별에 해당하는 부회장 후보에 대한 선거권을 둔다.

제23조 【입후보 자격】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본교에 재학 중인 9학년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중 한 곳에만 입후보 할 수 있다.

제24조 【후보자격의 제한】 선거공고일 현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 및 지도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입후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선거인 명부의 작성】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학급명렬표를 선거인 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

제26조 【입후보등록】

- ①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6일 이내에 선관위에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 ② 학생 선거권자 20명 이상 및 교사 3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단, 교사 추천서에는 학년부장과 담임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등록무효 및 사퇴】

- ①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 1일 전 17:00까지로 한다.
(휴일이 포함될 경우 선거 전 마지막 등교일로 한다.)
- ② 후보자가 선거 운동원을 둘 때에는 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선관위 위원은 선거 운동원을 겸임할 수 없다)(선거 운동원은 최대 10인으로 제한한다.)
- ③ 선거 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서 배부하는 선거운동 명찰을 달고 하여야 한다.
- ④ 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유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을 하는 경우
 3.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4. 선거인단 외 무단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경우
- ⑤ 후보자의 학부모 역시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 ⑥ 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 무효로 결정하는 것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 【벽보】

-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5매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벽보의 규격은 A2 용지 크기 이하로 한다.
- ③ 선관위는 후보자 인적사항 및 주요 공약을 정리한 공식 벽보와 함께 후보자 제출한 벽보를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게시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30조 【소견발표회】

- ① 입후보자는 합동 소견 발표회 또는 토론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 사항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입후보자는 등교 시간 및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조종례 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순회하면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③ 선관위는 선거 기간 중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소견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입후보자 각 10분 이내로 하고, 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한다. (단, 학교 측 사정에 의해 토론회는 생략할 수 있으며, 방역 수칙에 따라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 【투표】

-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 식으로 한다.
- ② 선관위는 선거일정 2일까지 투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투표 장소는 선관위가 투표 직전까지 설치해야 한다.
- ④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작성한다.

- ⑤ 투표사무는 선관위가 담당하며 대의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 ⑥ 후보자는 필요시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을 1인씩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 투표참관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록을 작성하여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 참관인의 입회하에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 ⑧ 천재지변, 사회재난, 감염병 등의 사유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 【개표】

- ① 선관위는 선거일전 2일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선관위가 담당하며 대의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인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 4.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5. 올바른 기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 6. 한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
 - 7. 기표한 것이 복사된 것
 - 8. 기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도 위원회 판단에 따름.
- ⑤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33조 【당선인 결정】

- ① 개표결과 전교 회장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초등의 경우 투표수 1,2위 혹은 공동 1위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전교회장, 고등부회장, 중등부회장의 단독 입후보자와 초등부회장 2인 입후보 시 선거권이 있는 학생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재선으로 진행한다.
- ② 제1항의 개표 결과 초등의 최다 득표자 다음으로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전교회장, 고등부회장, 중등부회장의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 ③ 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등록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에 미달하는 때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진행을 무효로 결정한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4.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재선거 절차는 제18조 내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5조 【보궐선거】

-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보궐선거 실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보궐선거 절차는 제18조 내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6조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 ① 선거와 당선 of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내에 창의인성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② 창의인성부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선무효】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2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지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자치회

제38조 【학급자치회의 구성】 학급회는 학급학생 전원으로 구성되며, 학급 담임교사는 학급회의 지도교사가 된다. (단, 초등과정 학급자치회는 별도의 초등 교육과정 계획 내 하우스 운영 계획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 【학급자치회의 기구와 임무】 학급회의 기구와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급회장
 1. 학급을 대표한다.
 2. 학급회장은 학생회 대의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3. 원활한 학급 운영을 위하여 담임교사와 협력한다.
 4. 건전한 학급 문화와 올바른 학습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② 학급부회장
 1. 원활한 학급 운영을 위하여 담임교사, 학급회장과 협력한다.
 2. 학급부회장은 학생회 대의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3. 건전한 학급 문화와 올바른 학습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4. 회장의 임시 부재, 전출 등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무를 대행한다.

- ③ 학급자치회는 학급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학급자치회 내에서의 합의하에 부서를 둔다.
- ④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학급학생은 어느 한 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하여야 한다.
- ⑤ 학급회장은 학급회의 의결을 통해 각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급회장은 담임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담임교사는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학급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제40조 【임원】 학급자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 ① 학급회장 1인, 학급부회장 1인
- ② 각 부서의 장 1인

제41조 【임원 선출 및 자격】

- ① 학급회장, 학급부회장은 학급학생이 직접 선출하고 학급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학교장에게 명단을 제출한다.
- ② 각부서의 장은 학급학생의 추천을 받아 학급회장이 학급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 ③ 학급자치회의 임원은 본교 해당 학급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성실하고, 학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 2.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
- ④ 각부서의 부서원은 학급회장이 학급부회장, 각 부서장, 담임교사와 협의하고, 학급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42조 【학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학급회장 및 학급부회장의 선출을 위한 학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급 선관위’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3조 【학급 선관위의 구성 및 기능】

- ① 선관위 위원은 학급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명 이내로 담임교사가 위촉한다.
 - 1. 위원으로 자원한 자
 - 2. 학급학생의 추천을 받은 자
 - 3.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급회장, 학급부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
- ③ 입후보자로 결원이 생길 경우 선관위 필요에 따라 담임교사가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선관위는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 1.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2. 선거활동에 관한 사항
 - 3. 선거 선전물, 소견 발표에 관한 사항
 - 4. 투표용지 제작, 관리에 관한 사항
 - 5. 투·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
 - 6. 당선자 확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제44조 【선거】

- ① 선거일은 학급담임과 협의하여 학급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하되 선거일 4일 전까지 [서식1]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 해당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 ③ (후보자 등록)학급회장, 학급부회장 후보에 등록하려는 학생은 학급학생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서식2], [서식3]의 후보자 등록서류를 선거일 3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학생은 선거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급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 가.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홍보물 또는 후보자 등록서
 - 나. 학급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약 홍보 및 유세활동
 - 다. 선관위와 후보자가 협의한 선거 직전의 정견발표
- ⑤ (투표) 투표는 선거일 학급회의 시간에 실시하고,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 식으로 하며,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작성한다.
- ⑥ (개표) 선관위는 선거종료 후 즉시 개표를 한다.
- ⑦ (당선인 결정) 학급 학생 인원의 다수 득표자를 학급회장 당선인으로 하고, 다음 순위 득표자를 학급부회장 당선인으로 한다.
- ⑧ (당선인 공고) 선관위는 학급게시판에 학급회장 및 학급부회장 당선자를 [서식4]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⑨ 천재지변, 사회재난, 감염병 등의 사유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관위는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4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학기제로 운영하며 중임이 가능하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직에서 해임될 수 있으며, 임원이 결원 될 때에는 1주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46조 【운영】 학급자치회 운영은 학급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학급회장 부재 시에는 학급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47조 【학급자치회의 종류】 학급자치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급자치회 : 학급 학생 전원
- ② 학급임원회 :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제48조 【학급자치회의 개최】

- ①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개최한다.
 1. 학급회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학급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학급 학생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③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임교사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9조 【안전처리】

- ① (의결) 학급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학급 학생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학생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급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및 건의 사항은 학급대의원(회장)을 통하여 학생회 대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
- ③ 학급회의의 의결사항은 학급학생이 실천하며, 다음 학급회의에서 의결사항에 대한 성과를 논의한다.

제4장 학생자치회 보칙

제50조 【보칙】

- ① 학생회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하고 합리적인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선관위 위원이 스스로 선거관리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②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 임원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서류, 회의록,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등을 포장하여 학생회 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학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급회 임원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서류, 회의록,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등을 포장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지도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장 규정 개정

제51조 【규정의 개정】 학생자치회 및 학급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학생회 대의원회의의 의결과 지도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52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대표 3인, 교직원대표 3인 등 6인으로 하고, 그 위원장은 위원회 학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학생대표 3인은 학생회장이 학생회 대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되, 가급적 다른 학년의 학생으로 한다.
- ③ 교직원대표 3인은 교직원회의에서 추천한다.

제53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역할】

- ① 위원회는 학생, 교직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개정 과정은 51조에 따른다.
- ② 위원회의 의결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생 투표 및 교직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 ① 본 규정은 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한 날부터 적용한다.
- ② 본 규정의 적용 이전에 선출된 2021학년도 1학기 학급자치회의 임원은 본 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 ① 본 규정은 2022학년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개정이 완료된 후 공고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 ① 본 규정은 2023학년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개정이 완료된 후 공고된 날부터 시행한다.